

● 제296회 ●
서울특별시의회(임시회) 폐회중
제2차 보건복지위원회

서울특별시 지역아동센터 서울시지원단
민간위탁 동의안
검 토 보 고 서

2020. 9. 3.

보 건 복 지 위 원 회
수 석 전 문 위 원

【 서울특별시장 제출 】

의안번호 1755

I. 조례안 개요

1. 제출자 및 제안경과

- 가. 제출자 : 서울특별시장
- 나. 제출일 : 2020. 8. 12.
- 다. 회부일 : 2020. 8. 21.

2.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가. 제안이유

- 지역아동센터 서울시지원단 운영 위탁사무는 「아동복지법」 및 「서울특별시 지역아동센터 지원에 관한 조례」에 근거하여 지역아동센터 지원 사업 전달체계의 효율적 운영 및 돌봄서비스 질 향상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
- 지역아동센터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해 운영컨설팅, 종사자 교육, 자원연계, 시설평가지원 및 행정 자문 등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 전문성과 노하우 등 자원을 보유하고 있는 전문기관에 재계약을 추진하고자 「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」 제4조의3에 따라 서울특별시의회 동의를 받고자 함

나. 주요내용

(1) 위탁사무명 : 지역아동센터 서울시지원단 운영

(2) 민간위탁 추진 근거 및 추진 필요성

○ 민간위탁 추진 근거

- 「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」 제4조

○ 민간위탁 추진 필요성

- 수탁기관의 축적된 전문지식을 토대로 지역아동센터 지원을 위한 자원을 지속적으로 발굴 및 연계하여, 지역아동센터 운영에 대한 안정성과 효율성을 확보하고자 함

(3) 위탁사무 내용

○ 지역아동센터 운영지원

○ 지역아동센터 외부 결연·협약을 위한 민간자원 개발 및 연계

○ 지역아동센터 종사자 교육운영·지원

○ 지역 특성에 따른 지역아동센터 조사연구

○ 시 특성화 시책사업 지원

○ 방과 후 돌봄 서비스 추진업무 지원

○ 지역아동센터 평가 지원 등

라. 민간위탁기간 : 3년(2021.1.1. ~ 2023.12.31.)

마. 수탁기관 선정방법 : 재계약

바. 소요예산 및 산출근거

○ 소요예산 : 329,600천원(2021년 예산요구액 기준)

○ 산출근거

- 인건비 216,753천원, 운영비 49,845천원, 사업비 62,984천원

사. 민간위탁운영평가위원회 심의결과 : 적정

다. 참고사항

(1) 관계법령

○ 「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」제4조

제4조(민간위탁 사무의 기준) ① 시장은 법령이나 조례에 정한 시장의 소관사무 중 조사·검사·검정·관리업무 등 시민의 권리·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의 사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.

1.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
2.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
3. 특수한 전문지식이나 기술을 요하는 사무
4. 그 밖에 시설관리 등 단순행정 관리사무

○ 「서울특별시 지역아동센터 지원에 관한 조례」제7조

제7조(비용의 지원) 시장은 센터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각 호의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.

1. 센터 사업비
2. 센터 종사자 인건비 및 처우개선비
3. 센터 이용 아동 급식비
4. 센터 환경개선 및 기능보강 등에 필요한 비용
5. 그 밖에 시장이 아동보호와 센터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

(2) 예산조치 : 2021년 민간위탁 예산편성

(3) 합 의 : 해당사항 없음

(4) 기 타 : 해당사항 없음

II. 검토의견 (수석전문위원 이문성)

1 동의안 제출 경위 및 민간위탁 추진 개요

- 본 동의안은 서울특별시 지역아동센터 서울시지원단(이하 “지원단”라 함)의 운영에 대한 시의회의 민간위탁 동의 후에 6년이 경과하여, 「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」 제4조의3(이하 “민간위탁조례”라 함)¹⁾에 따라 민간위탁 재계약²⁾을 추진하고자, 서울시의회의 동의를 다시 받기 위해 제출된 것임.
- 시장이 위탁하려는 사무의 구체적 내용은 다음과 같음.
 - 지역아동센터 운영지원
 - 지역아동센터 외부 결연·협약을 위한 민간자원 개발 및 연계
 - 지역아동센터 종사자 및 아동복지교사 교육 운영·지원

-
- 1) 「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」 제4조의3(의회동의 및 보고) ① 시장은 제4조 각 호 사무에 대해 민간위탁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서울특별시의회(이하 "의회"라 한다)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.
 - ② 재위탁 또는 재계약시에는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는 것으로 의회의 동의를 갈음한다. 다만, 해당사무를 연속하여 민간위탁하는 경우 의회의 동의를 받은 때로부터 6년이 경과한 후 최초로 도래하는 재위탁 또는 재계약시에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. <개정 2019. 3. 28.>
 - ③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때에는 위탁사무 및 운영 등에 대한 평가가 포함되어 있는 민간위탁 성과보고서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. <개정 2019. 3. 28.>
 - ④ 시장은 제15조제6항 단서에 따라 수탁기관이 위탁받은 사무의 일부에 대해 다시 위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.
 - ⑤ 시장은 의회의 동의 후에 민간위탁 예산을 편성할 수 있다. 다만, 재계약·재위탁의 경우는 예외로 한다. <신설 2019. 3. 28.>
 - 2) 「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」 제2조(정의)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.
 - 5. "재계약"이란 민간위탁하기로 결정된 사무에 대해 위탁기간 만료 후 기존 수탁기관과 다시 계약하는 것을 말한다.

- 지역 특성에 따른 지역아동센터 조사 연구
- 지역아동센터 평가 지원
- 지원단은 2011년 1월에 최초 설치한 이후 서울소재 지역아동센터의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한 운영컨설팅, 종사자 교육, 자원연계, 시설 평가지원 등 서울 소재 지역아동센터의 효과적 운영을 위한 지원 사업을 수행중이며 자세한 추진 현황은 다음과 같음.

< 민간위탁 재계약 추진 개요 >

- 수탁기관 : 사단법인 전국지역아동센터협의회
- 소재지 : 중구 난계로 11길 14
- 사무명 : 지역아동센터 서울시지원단 운영
- 위탁기간 : 3년('21.1.1.~'23.12.31.)
 - ◁ 1차 공개경쟁 '11.1.1 ~ '12.12.31(2년, (사)전국지역아동센터협의회)
 - ◁ 2차 공개경쟁 '13.1.1 ~ '15.12.31(3년,(사)전국지역아동센터협의회)
 - ◁ 3차 재 계약 '16.1.1 ~ '17.12.31(2년,(사)전국지역아동센터협의회)
 - ◁ 4차 공개경쟁 '18.1.1 ~ '20.12.31(3년,(사)전국지역아동센터협의회)
- 사업예산 : 326,800천원
- 위탁유형 : 사무위탁형

2 민간위탁 대상사무 여부에 대한 법적 검토

- 「지방자치법」 제9조제2항³⁾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예시하고 있는데, 지역아동센터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한 운영컨설팅, 종사자 교육, 자원연계, 시설평가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지역아동센터 서울시지원단 운영은 같은항 제2호 “주민의 복지증진에 관한 사무” 중 “노인·아동·심신장애인·청소년 및 여성의 보호와 복지증진”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어, 시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로 판단됨.
- 「민간위탁조례」 제4조⁴⁾ 제1항제3호에 따르면 시장의 소관 사무 중 “특수한 전문지식이나 기술을 요하는 사무”는 법인·단체 등에 민간위탁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으므로,
 - 지역아동센터에 대한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한 운영컨설팅, 종사자 교육, 자원연계, 시설평가지원 등을 통해 사회적 돌봄이 필요한 아동·청소년과 이를 포함한 가정 및 지역사회 욕구에 대응하고, 통합적 지원체계를 구축하는 지역아동센터 서울시지원단의 운영은 민간위탁

3) 「지방자치법」 제9조(자치단체의 사무범위) ② 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예시하면 다음 각 호와 같다. 다만, 법률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.

2. 주민의 복지증진에 관한 사무

라. 노인·아동·심신장애인·청소년 및 여성의 보호와 복지증진

4) 「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」 제4조(민간위탁 사무의 기준) ① 시장은 법령이나 조례에 정한 시장의 소관사무 중 조사·검사·검정·관리업무 등 시민의 권리·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의 사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.

1.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
2.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
3. 특수한 전문지식이나 기술을 요하는 사무
4. 그 밖에 시설관리 등 단순행정 관리사무

② 삭제

사무의 대상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을 것임.

- 또한 “2020년 지역아동센터 지원 사업안내(보건복지부 인구정책총괄과-12’20.01.02호)”에서 지역아동센터시도지원단 운영을 비영리 법인·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고 하고 있고, 2018년~2020년도 “지역아동센터 시도지원단 운영 안내(보건복지부 아동권리과-6619(2017.9.15.))”에서도 시도별 위탁 절차 계획 등 수립에 대한 내용을 명시하고 있는 바, 지역아동센터 서울시지원단 운영은 민간위탁 대상사무로 판단됨.

3 민간위탁 대상사무 여부에 대한 정책적 검토

- 동 민간위탁 사무는 최초 지원단이 구성된 2011년부터 현재까지 총 4회의 재계약·재위탁 절차를 통해 현수탁자인 사단법인 전국지역아동센터협회가 계속하여 수행하고 있음.
- 동 사무와 관련하여 “2019년 보건복지부 지역아동센터 시도지원단 사업평가”에 따르면 체계적인 사업계획 및 조직·인사관리 등을 통해 종사자 교육, 센터 운영지원 컨설팅 및 현장 소통 등 위탁사무 전반을 우수하게 수행하고 있다는 의견과 함께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관련 정책의 현장 적합성을 높이기 위해 지속적으로 지역아동센터 현장 및 부처와 소통·연할 수 있는 지원체계 구축 개선요청 사항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부대의견이 있었으며,
 - 민간위탁적격자 심의위원회에서도 지역아동센터 공공성 강화를 위한 사업 등 추진 및 중간조직으로의 역할 수행이 가능하도록 시 차원의 지속적 지원과 함께 법인·지역 자원 활용 연계가 필요하고, 회계 길

라잡이 책자 제작·배포하여 타 지역 및 전국 단위로 확대한 것과 같이 현장의 요구를 반영한 사업 추진의 필요성을 제시한 바 있음.

- 따라서 향후 재계약을 통해 현수탁자가 계속하여 사무를 위탁하게 될 경우, 앞에서 지적된 개선 요구사항을 보완하여 사업을 추진하여 지원단 운영의 전문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을 것임.

< '19년 지역아동센터시도 지원단 평가 주요 내용 >

구분	주요내용
우수사항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체계적인 사업계획 및 조직·인사관리등을 통해 종사자 교육, 센터 운영지원 컨설팅 및 현장 소통 등 위탁사무 전반을 우수하게 수행
개선요청 사항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지역자원 및 유관기관과의 연계·협력 및 홍보·조사연구 부문에 대해 지속적인 사업 추진 필요

4 종합 검토 의견

- 이상의 내용을 종합해 볼 때, ‘지역아동센터 서울시지원단 운영’사무는 민간위탁 사무로서의 법적 요건 상 특별한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됨.
- 또한 현 수탁자와 재계약을 추진하는 것과 관련하여서는, 2011년에 최초로 지원단을 구성 시 부터 서울시지원단 업무를 연속 수행해 오

고 있어 동종 유사단체(지역아동센터 협회 관련 업무, 전국적으로 6개 활동 중)와 비교 시 업무 연속성 및 숙련성이 탁월하며, 또한 현실적으로 타단체에서 공모할 가능성은 현저히 낮은 상황으로, 본 사업 시행 시점부터 지속적으로 사업을 운영하면서 업무수행능력이 검증된 현 위탁체가 동 민간위탁 사무를 추진하는 것은 민간의 자율성과 창의성을 활용해 행정사무의 효과성과 재정효율성을 달성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짐.